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안내

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안내

❍ **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에 따라**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 정보·성분 등을 **환경부장관(화학제품관리시스템, http://chemp.me.go.kr)**에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**30일 이내**에 신고하여야 함

※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동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기업마스터 계정 등록 및 회원가입 안내

기업마스터 계정 등록	기업 일반회원 가입
*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마스터 계정 신청을 승인	* 기업의 마스터가 해당 기업 직원의 계정을 승인

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

❍ **(신고철차)**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기업등록 및 회원가입 후 서류입력

기업 시스템 가입	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	검토 및 보완	신고증명서 발급
·(기업) 등록 및 회원 가입 ·(기술원) 승인	·(기업) 신고사항 입력 및 제출 ·(기술원) 입력 사항 및 제출 서류 확인	·(기술원) 입력 및 제출서류 보완 요청 ·(기업) 보완사항 확인 및 수정	·(기술원) 신고증명서 발급 ·(기업) 표시규정에 따른 표시 후 제품 유통

< 제출서류>

서류구분(시행규칙 제5호제4항)	입력방법
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	입력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	입력 및 업로드
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	업로드
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,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	입력 또는 업로드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	업로드
OEM, ODM 납품 증빙 서류(해당시)	업로드

기타 문의사항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객지원센터 1800-0490